

비자 · 재류자격 · 기타 정보

비자 · 재류자격

◆ 입학시험을 위한 ‘단기체재’ 비자

입학시험을 수험할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는 자국의 재외 일본국 공관에서 입국목적을 반드시 ‘수험을 위해’라고 신청하여 ‘단기체재’ 비자를 취득하십시오. 이 비자로는 수입이나 보수를 받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입학을 위한 ‘유학’ 비자

● 신규 입국의 경우

합격자는 본교가 발행한 입학허가서 또는 합격통지서, 여권, 관계서류를 재외 일본국 공관에 제출하여 ‘유학’ 비자를 신청하십시오. 또한,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에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토대학 국제 교류 서비스 오피스(International Service Office)에서는, 소속 학부·대학원 사무실로부터의 의뢰를 받고, 교토대학에 입학이 결정된 입학 예정자 및 그 가족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대리 신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학이 결정되면, 소속 학부·대학원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덧붙여 대사관 추천 등의 국비 유학생 및 대학간 학생 교류 협정에 근거하는 교환 유학생에 대해서는, 서비스 오피스에서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대리 신청 취급은 없습니다.

☞ 교토대학 국제 교류 서비스 오피스 : <https://kuiso.oc.kyoto-u.ac.jp/visa/about/ko>

● 이미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입학수속시의 재류자격이 ‘유학’이 아닌 경우(‘단기체재’ 등)는 입학결정 후에 입국관리국에서 ‘유학’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재류 카드

일본에 3개월 넘게 체재할 예정인 외국인 주거자에게는 재류 카드가 발행됩니다. 재류 카드는 원칙적으로 신치토세, 나리타, 하네다, 츄부, 간사이, 히로시마 및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는 입국심사 시에 상륙허가와 함께 교부됩니다. 그 외의 출입국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구의 관공서에 일본 거주지 신고를 하면, 등록된 주소지로 재류 카드가 배송됩니다. 재류 카드는 항상 휴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지의 신고 (주민등록)

3개월 넘게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 입국하고나서 14일 이내에 거주지구의 관공서에서 거주지 등록(주민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본에 3개월을 넘게 체재하는 외국인, 일본의 공적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재류 자격이 ‘단기 체재’ 혹은 ‘유학(재류 기간 3개월)’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일본에 오기 전에 여행보험 등에 가입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수속은 거주지의 시(구) 관공서·출장소에서 주민등록 신청 후에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부상이나 병을 치료할 시, 병원 접수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보험진료 적용 범위내의 의료비에 대해서 30%만 지불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족의 유무 등의 제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교토시에 살고 있는 단신 유학생의 경우 연간 약 18,000엔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유학생은 사전에 ‘자격의 활동허가’를 입국관리국에서 받은 경우에 한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주의점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 ① 아르바이트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② 재류 자격이 ‘유학’인 유학생의 노동가능시간은 일률적으로 1주일에 최대 28시간(장기 휴가중에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주 40시간의 범위내라면 하루에 8시간까지 가능)입니다.
- ③ 풍속영업 등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됩니다.